

기업현실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경제계의 동반성장지수 보완의견

2014. 8. 18



## 목 차

I. 스텝-업(Step-up) 방식의 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 정책제안	5
1. 제안배경	5
2. 정책제안	6
(1)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부문 개선방안	6
(2) 중소기업체감도 평가부문 개선방안	7
(3)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체계 개선방안	8
II. 현행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경제계의 보완의견	9
1.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방식 부문	9
(1) 협력사 금융(자금)지원 평가기준 개선	9
(2)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관련 평가방식 전환	10
(3) 납품단가의 조정실적 및 사급지원 평가기준 개선	11
(4) 업종특성과 기업현실에 맞도록 평가제도 보완	12
(5) 모기업 평가에 1·2차 협력사 지원실적 평가배점 조정	14
2.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방식 부문	16
(1) 체감도 평가대상 선정기준 마련 및 운영기준 개선	16
(2) 가감점 항목 추가 및 기준 개선	18
(3) 업종특성에 맞게 중소기업체감도 설문방식 보완	19
(4) 기타 체감도 조사 설문지 문구 수정	21
3. 동반성장지수 산정방식 및 가점부문	23
(1) 동반성장지수 등급산정 및 발표방식 개선	23
(2) 동반성장지수 가점방식 보완	24



## I. 스텝-업(Step-up) 방식의 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 정책제안

### 1. 제안배경

- 지난 3년간(2011~2013)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인식과 기업문화가 확산되고, 주요 기업의 협력사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임
  - 지수평가 대상기업은 56개사(2011년)에서 134개사(2014년)로 확대되고, 동반성장 추진영역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 공기업, 지자체 등으로 확산
  -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실적은 8,922억 원(2010년)에서 1조 5,942억 원(2013년)으로 1.8배(2014년은 1조 7,161억 원) 증가했고,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1차 협력사의 체감도가 크게 개선(1차 협력사 69.2%,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이 ‘더 좋아졌다’고 평가)
- 이제 한국경제의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생산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는 방향으로 동반성장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함
  - 한국경제는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글로벌 경쟁체제 심화로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기업성장이 정체되어 있음
  - 대·중소기업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만 동반성장 추진동력이 발생하며, 동반성장 문화 확산이 가능
  - 따라서 한국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성·창의성·도전성을 발휘하도록 기업역량과 특성, 경영자원, 기업규모에 맞는 정책 환경 조성 필요
- 하지만, 현행 동반성장지수는 기업규모, 경영역량, 업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주요 대기업간 획일적인 상대평가구조로 설계되어 기업의 자발성과 창의성 발휘에 역부족
  - 공정거래협약 평가방식의 기업만족도(100점 만점)는 59.5점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방식의 기업만족도는 47.8점으로 모두 낮은 수준
  - 지수평가 대상기업을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산업생태계의 강건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현행 지수 평가기준은 주요 대기업도 이행하기 어려운 수준
  - 동반성장지수의 시행목적은 기업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변화수준 등 지수의 시행효과에 대한 측정장치가 없어 정책효과 검증 곤란

- 기업의 이행부담은 큰 반면,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자발적 참여유인을 저하시키는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대안모델 개발이 시급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조사결과, 주요기업과 1차 협력사는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대안 모델로 각각 '기업의 경영자원과 역량에 맞는 모델'(37.7%, 22.9%)을 가장 높게 꼽음
- 이에,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상생협력연구회(회장 :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와 함께 산업생태계의 강건성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지수 대안모델을 정책제안
-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0개월간 상생협력연구회와 공정거래 협약 및 체감도에 대한 지수평가 대상기업의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반영하여 CSV형 상생협력모델 개발
- 현행 지수의 대안모델로 상생협력연구회가 제시한 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은 기업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동반성장 이행레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5단계 스텝-업(Step-Up) 방식으로 설계

## 2. 정책제안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기업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5단계 절대평가 방식(Step-Up)으로 설계하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높여나가는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을 제안
- 협약평가항목의 구성과 이행난이도를 기업역량과 현실여건에 맞게 1~5단계로 차등설계하고, 기업이 당초 선택한 레벨의 절대평가기준을 이수할 경우, 동반성장 이행수준을 점차 상위레벨로 높여나가는 스텝-업(Step-Up) 방식

### (1)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부문 개선방안

- 스텝-업(Step-Up) 방식의 상생협력 평가모델이 기업의 역량을 고려하여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선정, 이행등급 결정, 평가결과 활용의 개선 요구
- 평가대상 선정방법 :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현행 평가기업 선정방식을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역량과 업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이행단계(1스타~5스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함
- 이행등급 결정방법 : 기업들은 역량에 맞는 평가단계를 신청하여 이행평가를 받고, 이행을 인증 받은 기업들은 차년도 평가 시 상위단계 신청 또는 현행단계의 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 평가결과 활용방법 : 평가를 통해 당초 도전한 단계 또는 1단계 낮은 등급을 인증받는 기업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은 발표대상에서 제외하되, 개별 컨설팅으로 개선을 유도해야 함

(2) 중소기업체감도 평가부문 개선방안

- 협력사의 역량별 수요[범용기술업체(L형), 우선기술업체(A형), 핵심기술업체(J형) 등]를 반영한 중소기업체감도 모델의 제도화 방안은 협력사 역량 판단설문을 추가하고, 역량별 니즈(needs)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
- 이를 위해, 먼저 협력사의 역량별 집단(L·A·J) 구분은 <표 1>을 기준으로 체감도 조사대상 기업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설문지를 통해 판단 필요

<표 1> 협력사 역량별 집단(L·A·J) 판단기준

구분	L형	A형	J형
대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제품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범용제품, 대기업의 설계도면에 따라 생산하는 단순 제조·조립품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주문발주형 제품	기술력이 뛰어난 극소수 기업만 생산 가능한 핵심전략 제품
납품업체 선정과정	완전 경쟁입찰	소수 지명경쟁	수의계약
대기업과 관계	대기업이 언제든지 다른 납품업체로 전환 가능	대기업이 다른 납품업체로 전환 가능	대기업이 다른 납품업체로 전환이 매우 어려움

- 응답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보조설문은 <표 2>와 같고, 5개 설문 중에 가장 많은 응답이 속한 역량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음

<표 2> 협력사 역량별 집단(L·A·J) 판단기준의 보조지표

설문	L형	A형	J형
1 거래제품의 특성	범용기술, 표준품	우선기술(Middle-tech), 특정품	핵심전략부품
2 중소기업의 특성	노동집약적 단품생산	설계능력 부족 미래잠재력 보유	핵심기술력 보유
3 경쟁유형(일본)	다수 가격 경쟁형, 경쟁입찰	소수 기술 경쟁형	맞춤형 지명발주
4 중소기업의 핵심근로자	단순 기능 인력	숙련 기능 인력	고급 기술 인력
5 대기업 납품에 필요한 역량	원가경쟁력	품질·기술경쟁력	원천기술 개발 컨셉 제안 능력

- 체감도 반영비율, 쌍방향평가, 체감도 조사대상 선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
  - 정성평가인 중소기업체감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수준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신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지표로만 활용하거나 지수평가의 반영비율을 10% 이내로 낮춰야 함
  -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에 대한 대기업의 체감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쌍방향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체감도 조사대상은 거래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 파트너로 선발한 협력사에 국한

### (3)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체계 개선방안

-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 촉진에 효과적인 인센티브 도출을 위해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스텝-업(Step-Up) 방식의 인센티브체계 개발
  - 1단계는 중견·중소기업의 참여유도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5단계로 올라갈수록 추진노력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위단계로 도전을 촉진하는 단계별 접근방식(Step-Up)의 인센티브 시스템
-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유인 제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별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과 함께 운영방식 개선을 병행
  - 세액공제와 행정조사 면제 등 동반성장 이행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동반성장지수와 스텝-업(Step-Up) 모델 등 동반성장 평가시스템의 운영방식을 <표 3>의 응답결과와 같이 개선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 가능

<표 3> 동반성장 평가시스템 운영방식의 참여유인에 대한 응답결과

구분		참여유인 매우 높다	참여유인 다소 높다	보통이다	참여유인 다소 없다	참여유인 전혀 없다
Pass/Non Pass의 절대평가 방식 도입	대기업	37.8%	37.8%	10.8%	13.5%	0.0%
	중소기업	20.1%	33.0%	39.0%	5.0%	2.8%
양호등급 이상 격년제 평가 실시	대기업	35.1%	35.1%	16.2%	10.8%	2.7%
	중소기업	18.9%	31.8%	41.2%	5.3%	2.8%
명예기업제 도입	대기업	21.6%	24.3%	35.1%	18.9%	0.0%
	중소기업	9.1%	26.1%	54.4%	6.0%	4.4%
신규편입 기업은 당해 평가결과 공개여부 선택	대기업	13.5%	35.1%	32.4%	16.2%	2.7%
	중소기업	12.9%	22.3%	55.3%	5.0%	3.5%

## Ⅱ. 현행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경제계의 보완의견

※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인 「스텝-업(Step-Up) 방식의 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을 단기간에 적용·시행하기 어렵다면, 아래와 같이 기업현실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현행 지수에 대한 경제계의 보완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1.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방식 부문

#### (1) 협력사 금융(자금)지원 평가기준 개선

##### ■ 건의요지 ■

- 자금지원 실적 평가 시, 관련사업부문(제조업) 매출액 또는 하도급 거래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통합 지원실적을 평가할 때, 항목별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없애고, 직접·혼합·특별 지원실적의 합산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현행기준(2013.12.30)	경제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지원기준으로 매출액의 0.6% 이상 지원 시 만점.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는 직접, 혼합, 특별 지원 항목의 특점이 모두 항목별 만점의 30% 이상이 되어야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지원기준으로 <b>관련사업부문(제조업) 매출액의 0.6% 또는 하도급 거래금액의 0.6% 이상 지원 시 만점</b></li> <li>• 기업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자율성 인정을 위해 <b>항목별 최소기준 폐지</b></li> <li>-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는 직접, 혼합, 특별지원 항목의 <b>특점 합산을 기준으로 평가</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지원) 대기업이 자기자금을 직접 협력사에게 무상 제공 또는 대여. 금형비는 협력사에 <b>소유권 이전 시에만</b> 무상지원으로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지원) 대기업이 자기자금을 직접 협력사에게 무상 제공 또는 대여. 금형비는 협력사에 <b>소유권 이전 시에만 (삭제)</b> 무상지원으로 인정</li> </ul>

##### ■ 건의사유 ■

- 현행 전체 매출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로 평가하는 금융지원 항목의 경우,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종의 사업분야가 전체 매출의 극히 일부분인 경우 매우 불리
  - 따라서 금융지원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관련 사업부문의 매출액 또는 하도급 거래금액으로 변경하여 현실성을 높여야 함
  - 또한 금형비 지원시 협력업체의 별도 구매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협력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관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

- 기업마다 경영환경에 차이가 있음에도 항목별로 최소기준 30%를 지정하는 것은 민간자율을 추구하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 항목별 최소기준을 초과해야만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직접지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혼합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왜곡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금융지원 상품별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떤 상품을 지원받을지 여부는 협력사가 정할 사항이며, 대기업이 특정지원을 받을 것을 강요할 수 없음
  - 더불어 대기업에서 최소요건 충족을 위해 항목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협력사에 불필요한 자금 대출을 권장하는 병폐도 발생할 수 있음

## (2)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관련 평가방식 전환

### ■ 건의요지 ■

- 기술지원 및 보호실적 평가시 현행 매출액 대비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에 대한 상대평가를 협약체결업체 수 대비 기술지원 및 보호건수 비율에 의한 업종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현행기준(2013.12.30)	경제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지원건수/지원금액 및 기술보호 건수로 업종별로 매출액 대비 상대평가</li> <li>① 기술(개발·이전·공동개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체결 협약업체 수 대비 기술지원 및 보호건수 비율로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절대평가</li> <li>① 기술(개발·이전·공동개발) 지원 ※ 기술지원금액은 '금융지원실적' 항목으로 통합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보호(기술자료 임치제, 특허출허지원, 공동특허출원) <span style="margin-left: 20px;">&lt;단서 신설&gt;</spa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보호(기술자료 임치제, 특허출허지원, 공동 특허출원)</li> <li>• 다만, 기술보호 항목 평가가 부적합한 경우, 해당 항목을 제외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대체평가 ※ 대체항목(안) : 현금결제 및 대금결제기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점(건설업·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실도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 이상 : 3.2 ~ 4.0점</li> <li>- 60% 이상 : 2.4 ~ 3.2점 미만</li> <li>- 40% 이상 : 1.6 ~ 2.4점 미만</li> </ul> </li> <li>△ 이행도 (5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의 배점 축소 또는 기준 완화</li> </ul>

### ■ 건의사유 ■

- 현재 기술(개발)지원 분야는 업종별·기업별 특성과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특수성이 반영된 평가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 기술이전, 공동개발과제, 공동특허출원 등의 실적은 사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며, 매출액에 비례하지 않고, 연간 계획수립과 동반성장정책에 따른 참여유도 곤란
  - 지수평가 대상기업의 주력사업, 기업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지원건수, 지원금액을 취합한 후 상대평가하는 방식은 평가대상 기업간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
  - 또한 상대평가 대상에 평가등급별로 부여하는 비중 등 세부 평가 비중이 공개되고 있지 않고, 실적인정 건수,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 이에, 전 업종 대상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대비 상대평가에서 업종을 더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업종별로 협약체결 협력업체 수 대비 기술지원 및 보호건수에 대한 절대평가로의 전환해야 함
- 따라서, 기업특성상 임가공(재화의 단순가공) 업체와의 거래관련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평가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대체 평가하는 것이 필요(예시 : 현금결제 및 대금결제기일)
- 예컨대, 대기업 A사는 임가공 관련기술을 협력업체에 100% 이전하고 있어 기술자료 임치제 및 특허출원 관련 해당사항이 없음
- 건설업은 업종특성상 연구개발비나 공동기술개발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평가에 불리하므로 배점을 축소하거나, 또는 기준을 완화하여 배점조정이 필요

### (3) 납품단가의 조정실적 및 사급지원 평가기준 개선

#### ■ 건의요지 ■

- 이행도 평가부분에 대한 항목을 종전과 같이 협력사의 인상금액(총액) 대비 반영금액 비율로 평가해야 하며, 이행도의 배점도 하향 조정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현행기준(2013.12.30)	경제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평가기준</li> <li>- 배 점 : 총실도 2점, 이행도 1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품단가 조정 평가기준 현실화 및 구체화</li> <li>- 유·무상 사급 등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납품단가 조정한목 명시. 정량적 만점기준 하향 조정</li> <li>※ 예시 : 총실도 2점, 이행도 4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도 평가 : <u>조정신청금액 대비 반영률(50%) + 협약사 매입액 총액 대비 납품단가 조정실적 (50%)을 합산하여 평가</u></li> <li>- 배 점 : 총실도 2점, 이행도 10점</li> <li>- 인정기준 : 협약 체결 협력사 실적만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도 평가 : 종전과 같이 <u>협력사의 인상금액 (총액) 대비 반영금액 비율로 평가</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실도 2점 : 하도급계약서 납품단가 조정조항 반영</li> <li>• 이행도 10점 : 협력사 요청을 90%이상 반영시 만점 등 반영비율 별 점수 차등 부여</li> <li>※ 다만 협력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b>사급</b>은 인상요청금액을 100%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좌동&gt;</li> <li>• &lt;좌동&gt;</li> <li>※ 다만, 협력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b>유상무상 사급</b>은 인상요청금액을 100% 반영</li> </ul>

## ■ 건의사유 ■

-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은 경제상황 등에 대한 대기업에서 반영이 어렵고, 공동혁신활동 등을 통한 대기업-협력사 간 원가절감 활동 프로그램과 상충되므로 배점 축소 필요
  - 연간 수백만개의 아이টে를 거래하는 대기업 특성상 개별 아이টে에 대한 협력사 요청 유무 파악이 어렵고, 아이টে 변동이 잦아 아이টে별 거래기간이 짧음
  - 수주산업의 경우, 대기업도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물량이 확보되는데 발주처로부터 가격 인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협약사 요청, 제품제작 기간의 장기화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
  - 더불어 협약사 전체에 대한 매입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액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산업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방식으로 평가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
- 협력사 자금부담 및 자재 구매난 해소 등 사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유상사급<sup>1)</sup> 뿐만 아니라 무상사급<sup>2)</sup>도 실적으로 인정 필요
  - 무상사급은 원재료 매입비 관련 자금 확보, 원재료 가격 변화 등 매입비 상승 및 원자재 재고비용 부담이 없어 유·무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실적으로 인정 필요

### (4) 업종특성과 기업현실에 맞도록 평가제도 보완

## ■ 건의요지 ■

- 동반성장 평가 관련분야의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계약 사전심의대상을 업종별로 조정하고, 심의 대상 부재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야 함
- 다양한 협약 체결 대상(하도급, 비하도급, 중견기업 등)에 맞는 표준협약서, 평가기준을 신설해야 함
- 교육·훈련지원실적을 평가할 때, 정부기관이 인정한 교육시설 외에도 일정부분 사내교육도 인정해야 함
- 인력·채용지원실적을 평가할 때, 대기업의 인력이 협력사에 평일기준 연속하여 5일 이상 파견된 경우에만 인정하는 기준을 누계일수 기준으로 개선해야 함
- 협력사 외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행실적으로 인정해야 함

1) 유상사급 :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 가공하여 대기업에 재판매

2) 무상사급 :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생산하여 대기업에 판매(공급단가에 원재료비 불포함)



- 하도급, 비하도급, 중견기업 등 다양한 회사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항목이 적용하게 되어 지원규모면에서 차이가 발생한 점을 간과
  - 따라서, 4대 가이드라인, 현금지급, 대금지급기일 등 평가항목을 제외한 비하도급용 협약서와 평가기준의 신설 필요
- 교육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사내 교육에 대한 점수 인정이 필요
  - 예컨대, 항공사 A사의 경우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기술인증을 획득한 특수교육이며 이러한 특성상 사외 교육기관은 전무
- 협력사의 인력양성 부담 경감 효과는 동일함에도, '직무훈련 후 채용'이 아닌 '채용 후 직무훈련'이라는 이유로 실적을 불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 예컨대, B사는 협력업체가 자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직무훈련을 B사가 대신 직무훈련을 진행 중(2013년 기준 30여명 대상으로 2,000시간 실시)
- 단시간 지원의 경우 지원횟수가 많아지면 5일(누적) 이상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일이면 40시간으로, 단기간 지원(3시간)으로 계산할 시 14번이면 총 42시간으로 현행 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적으로 인정해야 함
- 다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협력사 이외의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행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현금, 대금지급실적 등은 협약사만, 그 외 지원사항은 비협약사에 대한 실적도 인정하는 방식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 필요

#### (5) 모기업 평가에 1·2차 협력사 지원실적 평가배점 조정

##### ■ 건의요지 ■

- 수급사업자의 협력사 지원방안 도입·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배점을 기존 15점에서 7.5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현행기준(2013.12.30)	경제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1·2차 협력사간 지원방안 도입계획(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목표(1점)</li> <li>㉡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2차 협력사에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2점)</li> <li>㉢ 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방문하여 의견 수렴 및 1차 협력사와의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방안 마련(2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1·2차 협력사간 지원방안 도입계획(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목표(0.5점)</li> <li>㉡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2차 협력사에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1점)</li> <li>㉢ 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방문하여 의견 수렴 및 1차 협력사와의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방안 마련(1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1·2차 협력사간 지원방안 도입실적(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2점)</li> <li>㉡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2차 협력사에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실적(5점)</li> <li>㉢ 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방문하여 의견 수렴 및 1차 협력사와의 거래실태를 파악한 실적(2점)</li> </ul> </li> <li>• 2차 협력사의 방문실적에 CEO만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1·2차 협력사간 지원방안 도입실적(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1점)</li> <li>㉡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2차 협력사에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실적(2.5점)</li> <li>㉢ 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방문하여 의견 수렴 및 1차 협력사와의 거래실태를 파악한 실적(1점)</li> </ul> </li> <li>• 2차 협력사의 방문실적에 CEO + 주요 경영진의 방문 인정</li> </ul>

## ■ 건의사유 ■

- 대기업과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의무를 1차 협력사를 대신하여 확장한 본 항목은 1차 협력사에 대한 간섭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음
  - 예컨대, A사의 경우 1차 협력사 B사에 납품대금을 100% 현금지급하고, 2차 협력사에 동일한 지급을 요구했으나, B사는 부당한 경영간섭이라고 호소하며 이를 거부
- 1·2차 협력사간 협력실적을 모기업에 전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은 부적합하므로 이에 대한 배점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배점의 15%를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의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관련배점을 15점에서 7.5점으로 축소 필요
- 별도의 평가제도를 만들어 1·2차 협력사간 협력을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
  - 모기업이 수천 개가 넘는 협력사 모두의 동반성장 현황을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일례로, 대기업 B사의 2차 협력사는 약 5,000여사로 이들 모두의 동반성장 추진현황을 일일이 체크 관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 1차 협력사를 위한 별도의 지수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된다면, 특정기업에 모든 책임을 부여할 때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CEO 이외에 주요 경영진(CPO, CTO 등)의 실적을 인정하고, 2차 협력사의 부담이 될 수 있는 협력사 방문이외에 협력사 초청으로 의견수렴하는 방식으로 인정 필요

## 2.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방식 부문

### (1) 체감도 평가대상 선정기준 마련 및 운영기준 개선

#### ■ 건의요지 ■

- 체감도 조사 표본업체를 현행 조사업체의 5배수에서 해당 대기업이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 수를 넘지 않는 범위의 제출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협력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피평가기업에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야 함
- 설문응답자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받은 자로 한정하고, 설문조사시 응답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 중소기업의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평가하여 피평가기업이 감점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응답항목에 대한 피평가대기업의 자기평가를 병행해야 함
-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협약 종료시점에 연 1회로 횟수를 축소해야 함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방식	경제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모수</li> <li>- 조사표본은 <b>체감도 조사업체의 5배수 제출</b>(1차 협력사 : 250社, 2차 협력사 : 100社)</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모수</li> <li>- 조사표본은 <b>해당 대기업과 협약체결한 협력사 수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출</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에서 제출한 협력사 명단 외에 동반위 조사 활동과정에서 발굴한 협력사도 설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b>기업에 확인절차 생략</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 <b>추가하거나, 변경시 피평가기업측에 확인하는 절차 신설</b>. 특히, 2차 협력사는 보다 확실한 검증절차 마련</li> </ul>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설문응답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하도록 하며, 응답자 대상 체감도 조사작성 방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 시행</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b>年 2회 실시</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b>年 1회 실시 또는 2회차 조사결과만 지수평가에 반영</b></li> </ul>

#### ■ 건의사유 ■

-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대상 50개사 및 조사표본 5배수(250개사) 제출규정은 협약체결 1차 협력사 수가 250개사 미만인 기업의 경우, 조사표본업체의 제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검증되지 않은 거래기업까지 제출해야 하는 모순
  - 협력사 수가 많지 않은 기업은 조사표본 업체수를 인위적으로 채우기 위해 동반성장 활동과는 무관한 일회성 거래기업이나 검증되지 않은 기업까지도 포함될 경우 평판조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 더불어, 피평가기업마다 협력사 수가 각각 다름에도 조사대상 업체는 1차 협력사 50개사, 2차 협력사 20개사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협력사가 다수인 기업에 유리한 구조

- 예컨대, 비제조업종의 대기업 B社는 협약체결 협력사가 55개사인 관계로 현행규정인 조사표본 250개사를 제출할 수 없어 거래비중이 낮거나, 비하도급 관계로 협력관계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협력사들까지 조사표본으로 제출
  - 반면, 제조업종의 대기업 C社는 체감도 조사표본 250개사의 수배에 달하는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기업 중 계약기간, 매출액의존도 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체감도 조사표본으로 제출했고, 그 결과 체감도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됨
  - 이에, 모든 피평가기업들이 협력사 규모와 상관없이 공정한 체감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표본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
- 평가업종과 전혀 무관하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등 거래관계상 동반성장활동 추진이 어려운 일회성 단순비품(종이컵 등) 구매업체의 2차 협력사가 설문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 예컨대, 건설업종은 업종특성상 현장 주변 현지업체와의 일회성 거래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업체와 동반성장을 지속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중 무작위로 체감도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따라서, 기업에서 제출한 협력사 범위 내에서만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되, 협력사 추가 변경 시에는 기업측에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함
  - 체감도 조사에 응답하는 중소기업 담당자 상당수가 대기업 동반성장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설문응답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작성토록 하여 설문응답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응답자로 하여금 체감도 조사의 취지 및 조사표 작성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응답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감점사례를 막아야 함
  -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협력사에 체감도를 조사해 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1년 단위의 동반성장 실적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업무부담도 가중되는 단점이 있음
    - 지수는 해당년도의 피평가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체감도 평가는 모든 지원프로그램이 완료되는 시점에 1회만 평가하거나, 상하반기 각 1회 평가하되, 상반기 평가는 지수평가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참고자료 제공으로 중간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하반기 평가만 지수 평가에 반영함이 바람직
    - 상반기 체감도 조사를 지수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는 체감도 조사의 문제점을 점검·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하반기 실제 평가 시에는 보다 객관성을 높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2) 가감점 항목 추가 및 기준 개선

### ■ 건의요지 ■

-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운영실적을 가점항목으로 추가하고, 2013년 평가결과 불합리한 가감점 기준을 개선해야 함
- 기업현실에 맞는 훈련교육 관련 가감점 기준을 개선해야 함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펀드 집행률 기준을 삭제해야 함
- 국내외 판로지원 자율진행 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함
- 현금지급비율 100% 지속 유지 및 협력사와 장기계약시 체결시 가점을 부여해야 함

가감점(2013년)	경제계 의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3자간 기술자료 임치실적을 가점항목으로 추가</b></li> <li>- 세부내용 : 3자간 기술자료 임치실적을 가점(1.0점)으로 신규 도입하고, 해당실적으로 기업별 기술자료 임치증을 제출받아 점수 산정</li> <li>- <b>산정방식 : 1건 × 0.02점 (50건 제출 시 만점)</b></li> <li>※ 평가 대상연도의 신규(갱신) 계약 건수 기준</li> <li>- 배점사유 : 제도 도입 이후 체결실적 고려해 산정</li> <li>※ 기술자료 임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성장 투자재원 일시불 출연기업에 인센티브 부여</li> <li>- 소진 전까지 해당년도 <b>잔여금액</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성장 투자재원 일시불 출연기업에 인센티브 부여</li> <li>- 소진 전까지 해당년도 <b>출연금액</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펀드 집행률 기준</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삭제&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판로지원의 개별항목 배점 조정</li> <li>- 자율진행 배점 0.5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판로지원의 개별항목 배점 조정</li> <li>- 자율진행 배점 <b>1.0점(만점)</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교육(0.5) : 인원당 0.0005점 (1000명 지원시 만점)</li> <li>- <b>과정당 협력사 10사 이상 참여</b></li> <li>- <b>4시간/일</b> 이상 교육 실적으로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교육(0.5) : 인원당 0.0005점 (1000명 지원시 만점)</li> <li>- &lt;삭제&gt;</li> <li>- <b>2시간/일</b> 이상 교육실적으로 평가</li> </ul>

### ■ 건의사유 ■

- 중소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및 활성화 필요
  - 이에, 중소기업 기술을 안전한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운영실적을 가점항목으로 추가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기여

- 2013년도 평가결과,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원을 많이 한 기업이 저평가 되거나, 정부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부작용 사례 시정 필요
  - 동반성장 투자재원 일시불 출연기업은 이자수익 투자기회 등의 손실발생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나 예외규정이 미비
    - 따라서 협약금액 일시불 출연 시 소진 전까지 해당년도 잔여금액을 출연금액으로 인정하는 예외기준 적용 필요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펀드 집행률로 인해 1억 원을 약정하고 1억 원을 집행한 기업보다 100억 원을 약정하고 15억 원을 집행한 기업이 더 낮은 점수를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집행률 기준은 삭제 필요
  - 일부 대기업은 업종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 않는 형태로 판로지원을 지원중이나, 현행 평가기준으로는 정부 추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없어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불이익 발생
    - 이에, 자율진행 배점을 0.5점에서 1.0점(만점)으로 상향 조정 필요
- 기업 현실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훈련교육 과정별 참여 협력사 수 및 일당 교육실적 인정시간이 축소되어야 함
  - 사업부별 진행되는 교육 또는 매 과정별 협력사 수를 10곳 이상 모집 곤란(예컨대, 차량전장사업부 협력사 FMEA 교육 등 각 사업부별 교육부분)
  - 협력사를 동반성장활동인 맞춤형 교육은 대부분 2~3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교육 만족도 및 수요가 높아 운영 중인 기업들이 증가할 추세이므로 실적 인정 필요

### (3) 업종특성에 맞게 중소기업 체감도 설문방식 보완

#### ■ 건의요지 ■

- 문항 중 해당사항 없는 업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해당 없음' 항목을 삽입해야 함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방식	경제계 의견
• 해외 판로 확대에 필요한 지원	• <u>해외 미진출 기업은 평가점수 및 순위산정에서 제외</u>
• 원자재 지원(구매대행, 사급지원)	• <u>사급지원이 필요한 협력사 없는 경우 제외</u>
• 기술자료 임치제도	• <u>해당사항 없는 업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u>
• 납품업자의 기술지원 요청	• <u>유통업종은 해당 조사대상에서 제외</u>
• 통산·식품업종의 지수평가시 2차 협력사 체감도 평가결과 반영	• <u>통산식품업종은 2차 협력사 체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u>
• 2, 3차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수행을 권유, 안내 받은 경험	• <u>건설업종은 해당 조사대상에서 제외</u>

## ■ 건의사유 ■

- 업종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설문내용과 응답방식은 체감도 평가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평가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업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문항 중 '해당 없음' 선택지가 추가되어야 함
  - 예컨대, 중견기업 D社는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필연적으로 납품업체의 해외판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외 판로확대에 필요한 지원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공개된 체감도 점수를 보면, 동 분야 평가에서 지수평가 대상기업 중 최하위로 평가
  - D社 뿐만 아니라 지수평가 대상기업 중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들과 해외 진출기업들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하여 평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업종은 평가점수 및 순위 산정 시 본 항목을 제외하거나 문항 중 '해당 없음' 선택지를 추가하여 응답하도록 해야 함
  - 특정 업종만 해당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시행여부를 묻는 문항, 납품업자의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평가의 형평성을 저하시키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업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없음' 란을 선택하도록 허용해줘야 함
- 통신·식품 업종은 실질적인 하도급 관계에 있는 2차 협력사가 없기 때문에 2차 협력사 체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통신업종은 2차 협력사가 없기 때문에 공정위 협약 평가시 2차 협력사 관련 평가항목의 평가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체감도 조사도 이를 반영해야 함
  - 식품업종의 경우 2차 협력사의 대부분이 농가, 어민 등으로 하도급 관계가 아니므로 2차 협력사 체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현행 체감도 조사항목 중 2,3차 협력사 관련문항은 제조업에만 해당되는 문항으로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업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에도 2, 3차 협력사 관련항목이 없음
  - 하지만,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없음' 선택지가 없어 응답자들이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선택해 점수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문항에 '해당 없음'란의 신설 필요

(4) 기타 체감도 조사 설문지 문구 수정

□ 불필요한 중복질 의는 하나로 통·폐합해야 함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 설문지	경제계 의견
<p>• [거래조건] 문 13), 문14), 문15), 문16)</p> <p>문13) 귀사는 거래 대기업과 거래 시 <u>납품(공사 또는 용역) 단가가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고</u> 생각합니까?</p> <p>문14) 귀사는 환율, 물가변동이나 원자재 가격인상 등 <u>원가 상승요인 발생 시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납품(공사 또는 용역) 단가를 적정하게 반영받고</u> 있습니까?</p> <p>문15) 귀사는 납기단축, 긴급주문, 설계변경 등 <u>추가비용 발생 시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납품(공사 또는 용역) 단가를 조정받고</u> 있습니까?</p> <p>문16) 귀사의 거래 대기업은 <u>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용역) 단가를 인하하고</u> 있습니까?</p>	<p>• [거래조건] 1개 문항으로 통합</p> <p>- (예시) 귀사의 거래 대기업은 원가상승요인을 반영, <u>정당한 사유없이 단가인하를 하지 않은 등 협력사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단가를 결정하고</u> 있습니까?</p> <p>☞ [건의사유] 해당 질의는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단가결정에 관한 부분</p>
<p>• [공정거래] 문6), 문7)</p> <p>문6) 귀사는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u>산업(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유용당하거나 탈취당하고</u> 있습니까?</p> <p>문7) 귀사는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u>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u> 받고 있습니까?</p>	<p>• [공정거래] 1개 문항으로 통합</p> <p>- (예시) 귀사는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u>산업재산권을 유용, 탈취당하거나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등 불공정 하도급을 경험한 적이</u> 있습니까?</p> <p>☞ [건의사유] 해당 질의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부분</p>
<p>• [거래조건] 문18), 문19, [운영체제] 문8)</p> <p>문18) 귀사는 거래 대기업이 <u>계열사나 관계회사(거래 대기업에서 퇴직한 임직원 경영회사 등)에 부당하게 물량을 배정하거나 거래가격 면에서 특혜를 주고</u> 있다고 생각합니까?</p> <p>문19) 귀사는 거래 대기업이 <u>공개(전자) 입찰시스템 등 물품(용역)의 구매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u> 있다고 생각합니까?</p> <p>문8) 귀사는 거래 대기업이 <u>협력사의 선정 및 운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u>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p>	<p>• [거래조건] 1개 문항으로 통합</p> <p>- (예시) : 귀사는 거래 대기업이 <u>협력사 선정 및 운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u>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 [건의사유] 해당 질의는 모두 공정한 협력사 선정 및 발주에 관한 부분</p>
<p>• [거래조건] 문 19) 공개(전자)입찰시스템 공정운영 여부</p> <p>문19) 귀사는 거래 대기업이 <u>공개(전자) 입찰시스템 등 물품(용역)의 구매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u> 있다고 생각합니까?</p>	<p>• [거래조건] 문19) 공개(전자)입찰시스템 예시 삭제</p> <p>- (예시) 귀사는 거래 대기업이 <u>모든 협력사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구매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u>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 [건의사유] 공개(전자)입찰시스템은 건설업종 등 특수업종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주문형 부품 또는 공동개발 부품이 많은 전자업종 등은 실현이 어려우므로 '공개(전자)입찰시스템' 문구를 삭제하고 '물품(용역)의 구매절차' 운영에 대해 묻는 것이 합리적</p>

□ 불필요한 오해 소지의 문구는 개선해야 함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 설문지	경제계 의견
<p>• <b>[거래조건]</b> 문 20)</p> <p>문20) 귀사는 거래 대기업이 <b>성과공유제 등의 계약을 통해 이익(협력성과)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있다고</b> 생각합니까?</p>	<p>• <b>[거래조건]</b> 문 20)</p> <p>- (예시) : 귀사는 거래 대기업이 귀사의 요청시 상호 협력하여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건의사유] 본 질의는 해당 대기업의 성과공유제 실시 유무나 확대의지 등에 관한 협력사의 체감도 평가질문이지만, 합리적 이익배분이라는 용어가 있어 결국에는 정당한 이익보장, 즉 단가에 관한 문제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p> <p>- 따라서 성과공유제도의 운영에 관한 질의 }로 변경되어야 함</p> <p>- 또한 성과공유제도는 협력사의 요청이 없을 경우 성립될 수 없는 제도이므로 '귀사의 요청'이라는 문구 추가 필요</p>
<p>• <b>[운영체계]</b> 문11) 기술자료 임치제도</p> <p>문11) 귀사의 거래 대기업은 귀사의 산업(지식)재산권 등 핵심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b>이용을 제약</b>하고 있습니까?</p>	<p>• <b>[운영체계]</b> 문11) 기술자료 임치제도</p> <p>- (예시) 귀사의 거래 대기업은 귀사의 산업(지식)재산권 등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b>이용을 홍보하거나 권장</b>하고 있습니까?</p>
<p>• <b>[협력관계]</b> 문7) 구매대행 및 사급제도 지원 유무</p> <p>문7) 귀사는 생산에 필요한 <b>원자재 구매에 대한 지원(구매대행 및 사급제도 등)을 받고</b> 있습니까?</p>	<p>• <b>[협력관계]</b> 문7) 구매대행 및 사급제도 지원 유무</p> <p>- (예시) 귀사는 거래 대기업이 <b>귀사의 요청시 원자재 구매대행, 사급제도 등 원자재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b> 생각하십니까?</p> <p>☞[건의사유] 구매대행, 사급제도는 대기업이 지원해도 원자재 구입에 따른 마진 확보 차원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협력사도 다수인 만큼 수혜유무가 아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변경 필요</p>
<p>• <b>[협력관계]</b> 문 11) 복리후생 시설·제도 이용가능 개수</p> <p>문11) 귀사는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b>복리후생과 관련된 시설 및 제도를 직,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b> 있습니까?          ①5점(4개 이상 이용시) ②4점(3개 이상 이용시)          ③3점(2개 이용시) ④ 2점(1개 이용시) ⑤ 이용할 수 없음</p>	<p>• <b>[협력관계]</b> 문 11) <b>협력사 임직원 복리후생 시설제도 만족도</b></p> <p>문11) 귀사는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복리후생과 관련된 시설 및 제도를 이용할 경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p> <p>☞[건의사유] 이용 가능한 복리후생 제도 및 시설 갯수에 따른 배정보다 복리후생제도 및 시설에 대한 협력사 임직원 만족도에 대한 질문이 타당</p> <p>- 제조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수와 임직원수가 많아 모든 협력사 임직원에게 동일한 복지혜택을 부여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소요</p>
<p>• '협력사(귀사)의 요청시' 문구 추가</p> <p>- 거래관계 문14) 문15) 문20)</p> <p>- 협력관계 문2) 문3) 문4) 문5) 문6) 문7) 문8) 문9) 문10) 문13) 문14) 문15)</p> <p>- 운용체계 문7) 문10) 문11)</p>	

### 3. 동반성장지수 산정방식 및 가점부분

#### (1) 동반성장지수 등급산정 및 발표방식 개선

##### ■ 건의요지 ■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을 평가 시에 반영해야 함
- 평가대상 기업들을 4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구분하여 발표하는 상대평가방식에서 최우수, 우수기업만 발표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협약과 체감도를 동률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에서 협약평가의 비중을 높여야 함
- 공정위의 협약 평가시 취급등급만 통보하기 보다는 상세점수를 통보해 줘야 함

동반성장지수 현행 운영방식	경제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4社, 5개 업종으로 분류</li> <li>• 협약, 체감도 결과를 합산 후 상대평가(4등급)</li> <li>• 발표등급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li> <li>• 평가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 반영</b></li> <li>• <b>절대평가로</b> 평가방식 전환</li> <li>• 발표등급 : <b>최우수, 우수</b></li> <li>• 평가참여기업 <b>인센티브 확대</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협약 : 중소기업 체감도 = <b>50 : 50</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협약 : 중소기업 체감도 = <b>60 : 40</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시 취급등급만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시 평가항목에 대한 <b>상세 점수 및 기준 공개 및 평가결과 피드백</b></li> </ul>

##### ■ 건의사유 ■

- 상대평가방식의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기업 상호간에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기업간 지원제도의 유기적 결합 등 기업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걸림돌
  - 본 센터가 지수평가기업을 대상으로 지수시행 이후 기업의 변화를 설문한 결과, ‘과도한 자금지원 및 등급서열화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26.4%)을 부정적 효과로 가장 많이 꼽음<sup>3)</sup>

<표 4> 지수 시행이후 기업의 변화

구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합계	
	대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하도급 공차채 개선	중소 경영역량 강화	소계	자금지원 등급서열화로 기업부담 가중	대·중·소간 협력사치 저하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동반성장 효과 체감 곤란	소계		
대	응답수건	41	16	3	60	28	14	3	1	46	106
	응답률(%)	38.7	15.1	2.8	<b>56.6</b>	26.4	13.2	2.8	1.0	<b>43.4</b>	100.0
협	응답수건	99	106	37	242	21	16	28	72	137	379
	응답률(%)	26.1	28.0	9.8	<b>63.9</b>	5.5	4.2	7.4	19.0	<b>36.1</b>	100.0

3) • 조사기간 : 2013. 5. 14 ~ 2013. 5. 22(9일간)

• 조사대상 :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72社 및 이들 기업의 1차 협력사 915社

- 대기업 :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72社(53社 응답, 응답률 73.6%)

- 1차 협력사 :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72社의 915개 1차 협력사(213社 응답, 응답률 23.3%)

- 평가대상기업 선정기준이 불명확한데다 5개 평가업종에 속하지 않는 기업까지 피평가기업으로 속해 있음
  - 예컨대, 항공운송업 대기업 E사는 주력사업이 아닌 제조사업부(매출액의 5% 차지)에 제조업체와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 따라서, 동반성장지수의 근거법인 상생법상 대기업을 적용하여 평가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우수등급 이하를 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동반성장 부진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이미지가 훼손되는 부작용 발생
  - 이에, 현행 4등급 발표방식에서 ‘우수’등급 이상 발표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 더불어 기업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우수기업 세액공제 혜택부여,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시 평가면제 등의 인센티브 확대 필요
- 협약이행도 평가의 경우 연초부터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운영되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수립·운영될 수 있으나, 체감도의 경우 점수폭이 좁고 가산점 평가기준이 연말에 확정되어 기업들의 개선여력이 부족한 만큼 협약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
- 평가항목에 대한 상세점수를 공개하여 기업들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협약이행도 향상과 평가의 신뢰성 제고 필요

## (2) 동반성장지수 가점방식 보완

### ■ 건의요지 ■

- 기업규모에 맞게 가중치를 적용한 가점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체감도조사 가점 평가항목에 기업 자체활동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야 함

지수가점 현행 운영방식	경제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감점 산정 시 기업규모를 반영 안 함</li> <li>• 체감도조사 가점 평가항목에 ①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1.5점), ②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펀드(1.0점) 조성에 점수를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감점 산정 시 기업규모를 반영</li> <li>• 재단을 통한 자원출연으로 점수 부여보다 기업 자체활동에 대한 배점 확대</li> </ul>

### ■ 건의사유 ■

- 현재 가감점기준은 기업규모가 반영되지 않은 채, 상대평가가 이루어져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므로 기업규모에 맞게 가중치를 적용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해야 함
- 동반성장활동에 대한 가점 평가항목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한 자원출연에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재단을 통한 자원출연에 대한 가점보다는 기업의 자체적인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어야 함